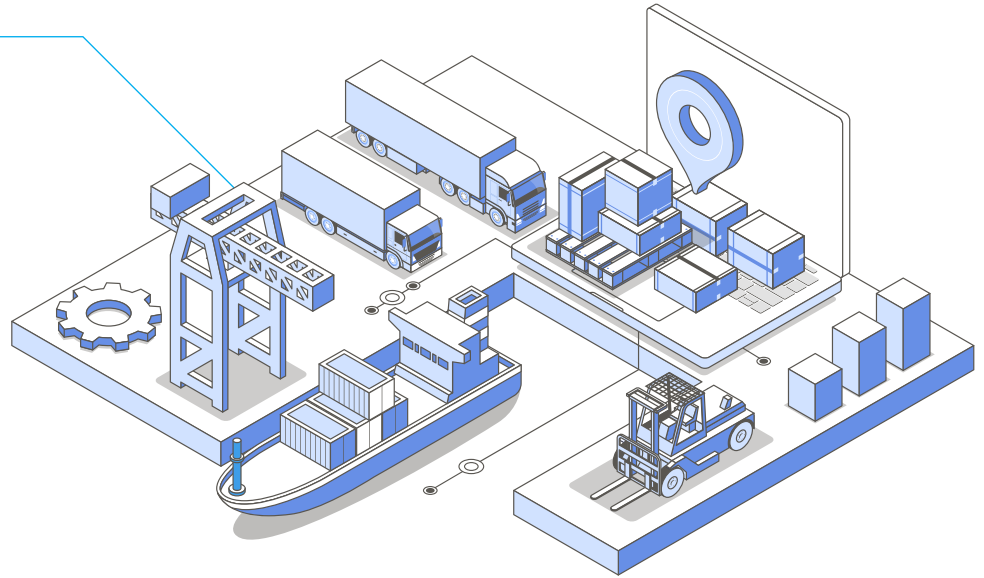


Overseas Customs Trends

해외 관세동향

VOL.03



CONTENTS

01. 중국

- 해관총서, 아크릴사 수입 시 품목번호 세분화 신고 요구
- 해관총서,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명확화 공고
- 해관총서,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선별검사 대상 지정
- 해관총서, 조세 위반행위 자진신고 처리절차 완화

02. EU

- EU집행위, 우크라이나 피난민 구호물품 수입관세 및 부가세 일시면제

03. 공통

-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



01. 중국

#아크릴사, 납세통지, 납부기한, 자진신고, 위반행위, 행정처벌, 선별검사

출처 :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

해관총서, 아크릴사 수입 시 품목번호 세분화 신고 요구

-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수입 아크릴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, 해관총서는 수입시 품목분류 번호를 세분화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

1 반덤핑 관세부과

- 한국, 일본, 튀르키예(터키)가 원산지인 수입 아크릴사*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
- * HS 5501.3000, 5503.3000, 5506.3000, 단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탄소섬유 원사는 제외
-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: 5년

2 수입 아크릴사의 수입신고 시 품목분류

HS 품목번호		물품
5501.3000	5501.3000.10	폴리아크릴로니트릴제 장섬유 다발
	5501.3000.90	변성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장섬유 다발 및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탄소섬유 원사
5503.3000	5503.3000.10	빛질하지 않거나 그 밖의 방적 전 가공이 되지 않은 폴리아크릴로니트릴제 단섬유
	5503.3000.90	빛질하지 않거나 그 밖의 방적 전 가공이 되지 않은 변성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단섬유
5506.3000	5506.3000.10	이미 빛질하였거나 그 밖의 방적 전 가공이 된 폴리아크릴로니트릴제 단섬유
	5506.3000.90	이미 빛질하였거나 그 밖의 방적 전 가공이 된 변성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단섬유

해관총서,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명확화 공고

- 세관이 발급하는 납세통지는 “단일창구” 와 “인터넷+세관”을 통해 납세의무자에게 전송
-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납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
- 납세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세관전용 납세고지서를 출력한 경우, 해당 서식에 기재된 날짜가 세관이 납세통지를 한 날짜임
-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한 경우,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납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5 업무일 종료전까지 납부

- 기한 내 미납부시, 세관은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를 완료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체납세액의 1만분의 5(0.05%)의 체납금을 가산·징수
- 시행일자 : '22. 7. 15.

해관총서, 일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선별검사 대상 지정

- 소비자 권익보호 및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**법정 검사대상 물품 이외**, 아래 수출입 물품을 **선별검사 대상**으로 지정하여 공포
 - 수입 물품 : 학생 문구, 영유아용품, 가정용 식기세척기, 전자 비데, 구강청결기기, 모조 악세사리 등
 - 수출 물품 : 어린이용 완구, 어린이용 자전거, 어린이용 키보드, 전기 온수주머니 등
- 시행일자 : '22. 7. 13.

해관총서, 조세 위반행위 자진신고 처리절차 완화

- 수출입업체가 **조세 관련 위반행위를 자진신고** 할 경우 **행정처벌을 면제**하는 기준 **대폭 완화**
 - (행정처벌 면제기간) **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→ 6개월로 확대**
 - (행정처벌 면제기준)

개정 前	개정 後
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	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
세금탈루, 부족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%이하로 소액인 경우 또는 세금탈루, 부족 납부한 세액이 50만 위안 이하	세금탈루, 부족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%이하 또는 세금탈루, 부족 납부한 세액이 100만 위안 이하 : 6월~1년

- (감면신청 규정신설) 자진신고 수출입업체 경우 세관이 행정처벌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 체납액에 대해 감면 신청 가능
- (시행기간) '22. 7. 1.부터 '23. 12. 31.까지



02. EU

#우크라이나, 피난민, 구호물품, 수입관세, 부가세

출처 :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

EU집행위, 우크라이나 피난민 구호물품 수입관세 및 부가세 일시면제

- (대상기관) 국가조직 및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**자선 및 구호단체** 등이 수입하는 물품
- (대상물품) 대상기관으로부터 **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을 대상, 무상배포** 되는 물품 또는 대상기관 보호시설 내 **피난민에게 무상지급**되는 물품
- (적용국가) 오스트리아, 크로아티아, 체코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 등 **18개국**

※ '22. 2. 24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'22. 12. 31일까지 유효

03. 공통

#해외통관제도 설명회, 상담회, 관세관

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

- 해외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(8개국)에 파견된 해외주재 관세관을 국내로 초청해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
- 일시 및 장소

구분	서울	부산
일시	'22. 8. 30.(화) 14:00~18:00 * (설명회) 14:00~17:30 * (1:1상담) 14:30~18:00	'22. 9. 1.(목) 14:00~18:00 * (설명회) 14:00~17:30 * (1:1상담) 14:30~18:00
장소	코엑스 2층 아셈볼룸	백스코 제2전시장(신관) 3층 5A홀

※ 설명회 참가신청서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제출(설명회 신청은 필수사항이나 1:1상담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신청)

● 발표 주제

주제	발표자
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 등 미국 관세행정 주요 이슈	채봉규(미국 LA 관세관)
통관단일창구 개선 등 EU 통관제도 동향	정재호(EU 관세관)
중국 관세행정 개혁에 따른 무역원활화와 통관어려움 해소	하춘호(중국 북경 관세관)
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에서의 RCEP 활용방안	이나에(일본 관세관)
최신 베트남 관세행정 동향 및 주의사항	김용철(베트남 관세관)
비대면 심사에 따른 통관애로와 대응방안	최영훈(인도 관세관)
한-인니 AEO MRA 발효 등 최신 관세동향 및 유의사항	양영준(인도네시아 관세관)
태국 품목분류 분쟁 및 사후심사 대응방안	정지은(태국 관세관)
세관통관 및 세관절차에서의 간소화 제도	류라즈(주한 터키 상무관)